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5307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530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1. 7. 12 선고 2000나17688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A 담당변호사 강BA)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7. 12. 선고 2000나17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1. 12. 피고와 사이에 담보부 보증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2. 17. 피고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동DA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부 대출에 관한 보증원금 5억 5,000만 원, 보증기한 1999. 2. 17.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어음할인대출을 하면서 배서·교부받은 윤옥단 발행의 액면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부도 후인 1998. 3. 27. 및 같은 해 4. 2. 그 배서인들인 KK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반DB판지에 대한 소구권행사 통지를 하였다가, 이 회사들이 같은 해 3. 30. 및 같은 해 4. 7.경 자신들의 배서가 위조되었으니 어음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 오자, 더 이상 소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

(3) 원고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받은 다음, 같은 해 12. 7. 피고에게 협약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 보증채무액으로 2억 16,356,34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소구권 상실로 인한 일부 면책을 이유로 하여 1999. 8. 11. 원고에게 1억 54,118,000원만을 지급하였다.

(4) 협약의 내용을 보면, (가) 먼저 원고의 의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담보물의 경매,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배당요구, 채권신고,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담보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채권자는 기금으로부터 보증채무를 이행(일부이행 포함)받는 즉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에 담보물의 점유이전, 대위담보권의 이전등기 등 담보권 대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보증부 대출이 어음할인방식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기금에 당해 어음을 배서·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어음은 만기에 어음요건을 완비하여 제시되고 그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보전되어 있어야 하며(제16조 제2항), 기금이 보증채무이행을 원인으로 약속어음, 수표, 기타 보증부 대출 관련 유가증권상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채무이행을 받는 즉시 기금에 당해 유가증권을 유효한 방법으로 양도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나) 피고의 면책에 관하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제20조), 그 4호로, 제9조(담보권의 보전)를 위반하였을 때 및 그 8호로, 담보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또는 권리제한이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부동산담보가 상실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원고의 소구권 상실은 협약 제9조, 제16조 등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협약 제20조 제4호 및 제8호에서 정한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구권이 상실된 이 사건 어음금의 한도에서 그 보증의 책임을 면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협약 제9조, 제16조에 의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풀이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소구권 상실은 협약 제9조, 제16조에서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협약 제20조 제4호, 제8호에서 정한 피고의 면책사유를 충족하며, 따라서 피고는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보증채무액 중 이 사건 어음금 상당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의 소구권 상실로 인하여 피고가 면책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협약 제2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담보부 보증에 대한 면책기준' 중 유의사항 2항의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